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시 민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일·숙직자에 대한 당직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당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당을 인상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한편, 방법원의 직급비용으로 사문화된 방법수당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가. 목적규정에 실비보상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1조).

나. 현행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를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0,000원 인상 조정함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

다. 사문화된 방법수당 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

라. 종전의 일·숙직비 지급은 국가기준의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당직수당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

- 현행 1인당 1회 10,000원 → 1인당 1회 35,000원으로 인상조정

III. 검토의견

1. 의료업무등의 수당 인상조정 경위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1986년도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하여 전문의 가급 기준으로 보면 월 660만원 대비 민간 월 800~1,000만원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서 국가의 경우 2003. 7. 1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을 인상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181(2003. 6. 14)호 및 서울특별시 인사12540-2102(2003. 6. 23)호의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게 함은 물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월 30만원 인상조정하여 2003. 7.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보건소의 의료업무 등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직원은 총 8명으로서 전임계약직 의사 6명, 일반직 의사 2명이며, 연간 2,88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2. 일·숙직수당 근거규정 명문화

안 제4조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실비수당은 1인당 1회 35,000원을 지급한다」고 신설조항을 두고 있는 바,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17쪽)에 공무원 일·숙직수당 기준의 개선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게 됨에 따라 그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일·숙직수당 개선 필요성

먼저 수당개선의 필요성을 보면, 기관마다 근무횟수,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국가 기준에 따라 확일적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현행 일·숙직 수당은 저녁과 아침 2식 급량비에 불과하므로 실비보상에 못 미쳐 현실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지급단가는 기능직 10등급의 초과근무 수당(35,696원)에도 못 미쳐 이에 대한 개선이 제기되어 서울특별시 청사 12141-8584(2003. 10. 30)호의 일·숙직비 개선계획이 통보되어 당직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존 1회 10,000원에서 35,000원으로 변경된 것을 참고하며 별표 1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급단가를 조정, 실비보상에 초과근무수당 기준으로 보전하여 2004. 1. 1부터 시행하려는 바, 이 인상조정안은 종전보다 현실화된 실비보상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타 기관의 당직비 수당 지급사례를 보면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우 석유공사와 도로공사는 30,000원(휴일 35,000원), 가스공사 30,000원(휴일 40,000원), 한국전력 40,000원이며,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30,000원, 경기도 35,000원 수준으로 인상조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IV.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등)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

등급별 봉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현황 (기준호봉)

(단위 : 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기능10급
봉 급 (1일당=봉급×1/26)	1,474,200 (56,700)	1,250,700 (48,103)	1,122,300 (43,165)	1,005,700 (38,680)	815,900 (31,381)
시간외수당 (1시간당)	8,062	6,840	6,138	5,500	4,462
4시간	32,248	27,360	24,548	22,000	17,848
8시간	64,496	54,720	49,096	44,000	35,696

※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게 지급(당해 직급 기준 호봉 봉급의 7할×1/192×1.5)

□ 지급단가 조정 : 실비보상에 초과근무수당 기준으로 보전

○ 1일 10,000원 → 35,000원

- 산출근거

● 27,360원 = 4시간×6,840원 (6급 초과근무수당 기준적용)

● 10,000원 = 2식×5,000원 (급량비 기준적용)

⇒ 37,360원 = 27,360원 + 10,000원